

의안
번호

374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74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로 마련된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에 따라 부패 취약 요인을 보완하고, 변화한 환경에 맞는 표창 수요를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·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성북구민대상 심사 부문 및 추천 요건 변경(안 제8조)

나. 포상절차 변경(안 제12조)

다. 포상취소 신설(안 제19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상훈법」, 「정부 표창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9. 19. ~ 2024. 10. 10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부패 취약 요인을 보완하고, 포상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8조제1항제3호는 성북구민대상 5개 부문 중 미풍양속 부문을 삭제하고 환경·안전 부문으로 대체한 것으로, 이는 미풍양속 부문은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선행·봉사 부문과의 중복성을 고려하고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,
제2항은 성북구민대상 추천 요건 기준 중 거주요건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, 추천 연명 주민 인원은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 것으로, 이는 구민대상의 위상 및 포상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 및 추천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사료 됨.

〈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전·후 비교〉

현행	개정안
제8조(성북구민대상) ① 성북구민대상은 5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지역사회발전·부문 2. 선행봉사부문 3. <u>미풍양속부문</u> 4. 문화, 체육부문 5. 모범 청소년부문	제8조(성북구민대상) ① 성북구민대상은 5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지역사회 발전·부문 2. 선행·봉사 부문 3. 환경·안전 부문 4. 문화, 체육 부문 5. 모범 청소년 부문
② 성북구민대상은 시상일 기준 성북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	② 성북구민대상은 시상일 기준 성북구에 5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

로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, <u>10명</u> 이상의 주민이 연명으로 관할 동장을 거쳐 추천하거나 관계기관장(동장, 파출소장, 학교장 등) 및 구청 국장 이상 간부가 추천한다. (개정 2020.12.31.)	로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, <u>30명</u> 이상의 주민이 연명으로 관할 동장을 거쳐 추천하거나 관계기관장(동장, 파출소장, 학교장 등) 및 구청 국장 이상 간부가 추천한다. (개정 2020.12.31.)
---	---

- 안 제12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의 임의적 생략 규정인 ‘특별한 경우’를 삭제한 것이며,

〈안 제12조제2항 개정 전·후 비교〉

현행	개정안
제12조(포상절차) ① (생략)	제12조(포상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표창장, 성북구민대상,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공무원표창은 <u>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</u>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	② 표창장, 성북구민대상,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공무원표창은 <u>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 다만,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- 안 제19조의2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‘포상 취소’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, 취소 사유로 ‘포상자의 공적이 거짓이거나’, ‘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’에 한해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, 포상취소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포상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으며,
아울러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수여할 때에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아니 한 점에서 취소 시에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. 이는 「상훈법」 제8조(서훈의 취소 등)¹⁾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8조(표창

1) 「상훈법」 제8조(서훈의 취소 등)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.

1.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(敵對地域)으로 도피한 경우

취소의 절차)²⁾를 인용하여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〈안 제19조의2 신설〉

현행	개정안
〈신설〉	제19조의2(포상취소)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,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. 1.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.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- 그 밖의 개정 조항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‘특별한 경우’ 등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기준 개선 및 거짓·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상자에 대한 포상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3.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2)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8조(표창 취소의 절차)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(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(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)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.